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2025-8호

「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5년 11월 25일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현장점검(2025.07.) 및 개정 권고

2. 주요내용

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 마련

-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등 부패 방지를 위해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

3. 의견제출

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법인 및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5년 12월 15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(참조: 의정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

다. 주소 및 전화번호, 기타 참고사항 등

4. 기타사항

가. 보내실 곳: 성동구 고산자로 266 (행당동), 성동구의회 의정팀

나. 문 의 처

○ 전 화: 02-2286-6452

○ 팩 스: 02-2286-5948

○ 이메일: yun0201@sd.go.kr